

의안번호	2211622
의 퇴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5.11.11.
추계번호	25B40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제6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함	의무규정
	안 제2조(정의) 제14호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의무규정
	안 제2조(정의) 제14호의2 신설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함	의무규정
	안 제2조(정의) 제17호 신설	17.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1.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의 예외) 신설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경우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3조의2(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u>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함(제1항)</u>	의무규정
		<u>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항)</u>	
		<u>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와 공단 이사장으로 함(제3항)</u>	
		<u>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함(제4항)</u>	
		<u>1.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대표 또는 공단의 상임이사</u>	
6	안 제23조의3(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u>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함(제1항)</u>	의무규정
		<u>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함(제2항)</u>	의무규정
		<u>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함.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함(제3항)</u>	의무규정
		<u>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음(제4항)</u>	재량규정
		<u>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음(제5항)</u>	재량규정
		<u>제3항 단서에 따른 공단의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23조의6(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 이상(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하나로 본다)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선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함(제1항)	재량·의무규정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8	안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그 밖에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9	안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의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한 자	의무규정
10	안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1의4.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제6호·제14호의2 및 제17호) –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14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미대상 –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내용에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규정(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²⁾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의 예외) 신설		
3	안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5	안 제23조의2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 미대상 –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규정된 운영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또는 공단 이사장),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대표(또는 공단의 상임이사),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 전문가 등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수가 같도록 구성함 –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 공단에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퇴직연금사업자에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23조의3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미대상(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및 제5항) –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연금기금의 구분회계,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설립, 금융투자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겸업 허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추가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단서 및 제6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7	안 제23조의6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 미대상 – (제1항)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용자는 3개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선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4항)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8	안 제23조의16 (지도·감독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45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³⁾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0	안 제48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안 제2조제14호)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⁴⁾를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3)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 4)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의 내역사업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⁵⁾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 (사업방법)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업
- (지원내용)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2025년 기준 1인당 최대 27만3천원), 사업장 1개 회사 당 최대 30명, 최대 3년, 가입절차 간소화⁶⁾, 수수료 면제
- (시행경과) 2022년 4월 도입, 2022년 9월 사업주 재정지원 실시, 2024년 1월 근로자 재정지원 실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
- 첫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⁷⁾는 국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⁸⁾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원수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¹⁰⁾과 지원수준¹¹⁾ 및 지원기간¹²⁾ 등을 규정하고 있음

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6)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7)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3호(2025. 1. 1. 시행)

10)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이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요건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둘째,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가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유무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여부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 제23조의3제3항 단서 및 제6항)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해 공단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공단의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 설립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 설립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 및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와 규모의 산출이 곤란함

- 또한, 개정안은 공단의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11)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7만3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12)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하기 어려우며,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 형태, 정원 규모, 운영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인건비·운영비 등 소요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희	02-6788-3737	nhee@nabo.go.kr